형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훈기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9329 발의연월일: 2025. 3. 25.

발 의 자:이훈기·김용만·박지원

김영배 • 문금주 • 정을호

신장식 · 강유정 · 허종식

김정호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무고죄를 규정하고 있음.

최근 한 방송프로그램에 소개된 사례에 대해 국민적 공분이 일었는데, 타인으로 하여금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직접 타인의 차량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통행을 방해하는 위치로 이동시킨후 공무소에 신고함으로써 차량소유자에게 불편을 끼치는 악의적인행위에 대해 무고죄로 처벌할 수 없어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.

이에 타인으로 하여금 불리한 행정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도 무고죄로써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

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무고한 행정처분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방지하려는 것임(안 제156조 및 제157조).

법률 제 호
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
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5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타인으로 하여금 불리한 행정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제15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第157條(自白·自首) 전조의 죄를 범한 자가 그 공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第156條(誣告) (생 략)	第156條(誣告) <u>①</u> (현행 제목 외		
	의 부분과 같음)		
<u><신 설></u>	② 타인으로 하여금 불리한 행		
	정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		
	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		
	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년		
	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		
	하의 벌금에 처한다.		
第157條(自白・自首) 第153條는	第157條(自白・自首) 전조의 죄를		
前條에 準用한다.	범한 자가 그 공술한 사건의		
	재판 또는 처분이 확정되기 전		
	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		
	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.		